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교재 추록(23.10)

- 이패스 소방사관학원 박이준 -

①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3.8.16.] [법률 제19628호, 2023.8.16. 일부개정]

○ 146쪽에 다음을 추가

6. 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소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②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801호, 2023.10.10. 일부개정]

+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등)

○ 33쪽 18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 소방본부장이 되고

○ 105쪽 표를 다음으로 대체

파견사유	파견기간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특히 필요시 <u>5년</u> 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1~3호 중 “직제상 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음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특히 필요시 <u>2년</u> 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이 영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직제상 파견” :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

어 있는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5)

○ 106쪽 : <(2) 예외> 전부를 다음으로 대체

(2) 예외

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제5항).

② 직제상 파견

㉠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제상 파견”)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5 제1항).

㉡ 제30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3항).

○ 108쪽 <(1)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지정>

- ① 전부를 다음으로 대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 제1항 본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註: 직권휴직 + 청원 휴직)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
|---|

- ②에서 :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 휴직으로 인하여

○ 108쪽 <(2) 수당지급 및 해제>의 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 109쪽 Box의 국가공무원법

- 제43조 제1항 단서 : 다만, 제71조 제2항 제4호(註: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2항 추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 ⑥

○ 110쪽

- 6행 :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4항 본문에 →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 본문에

- 14행 : 제43조 제2항에 따라 → 제43조 제3항에 따라

○ 111쪽 : <4.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 전부를 다음으로 대체

4. 휴직, 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4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804호, 2023.10.10.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관할(제2조) : 시행일이 2024. 1. 1.이므로 생략

○ 267쪽

- 아래에서 10행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 사건으로서 → 징계등 사건으로서

- 아래에서 4행 : 징계등 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 268쪽 맨 아래 Box에서

- 6행 :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13행 :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269쪽

- 13행 :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제8조).> 전부를 다음으로 대체
- ㉠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제8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16행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 제6항). →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제4조 제6항).

○ 269쪽

- 아래에서 10행 :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 아래에서 4행 :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 아래에서 2행 : 징계등 의결을 요구 → 징계의결등을 요구

○ 270쪽

- 1행 : 징계등 의결을 → 징계의결등을
 - 4행 :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 첫째 Box에서 2호와 2의2호를 다음으로 대체하고, 7호를 추가
 2. 별지 제1호서 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
 -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과 ㉡을 다음으로 대체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4항).

- 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 ㉔에서 : 징계등 의결 → 징계의결등 (2곳)
- 아래 Box의 <감사원의 조사사건>에서 : 공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징계처분등”) 요구서
- 아래에서 2행 : 징계등 의결을 → 징계의결등을

○ 271쪽

- <(3) 징계등 의결 기한> 바로 윗줄에 다음을 추가하고, 이하의 (3)~(10) 숫자를 변경
- (3)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0조의2).
- 5행 : 징계등 의결 → 징계의결등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 징계의결등을
- 8행 : 징계등 의결이 → 징계의결등이
- 10행 : 징계등 의결 → 징계의결등

○ 271쪽 <(4)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에서

- (4)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 (4)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심의 대상자’를 모두 ‘혐의자’로 수정 (17곳)
- ‘징계등 의결’을 모두 ‘징계의결등’으로 수정
- 아래에서 3행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 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 272쪽 1행 :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

○ 272쪽 <(5) 심문과 진술권>에서

- ‘심의 대상자’를 모두 ‘혐의자’로 수정 (4곳)
- ‘징계등 의결’을 모두 ‘징계의결등’으로 수정 (4곳)
- 21행 :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 다만, 중징계등
- 아래에서 3행 :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 중징계등

○ 이미 공지한 추록의 <우선심사>에서

- ‘심의 대상자’를 모두 ‘혐의자’로 수정
- ‘징계등 의결’을 모두 ‘징계의결등’으로 수정

(1)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3항)</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p>가. 다른 공무원</p><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직원</p><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2)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p>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p></div> |
|---|

③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4항).

④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제6항).

⑤ 그 밖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제7항).

④ 기타

○ 244쪽 Box의 8호 : 제30조 제5호에 → 제38조 제5호에

- 끝 -